

아동 진술 역량의 사전 평가에 대한 고찰: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이 승 진[†]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아동의 증언 능력과 관련하여 아동의 인지 및 언어적 기초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평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전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진실-거짓 구별 가능성이 아동의 증언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에 대한 학술 연구들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지각도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 진술 능력 평가의 올바른 접근을 위해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 사고의 발달, 진실-거짓 구별 능력의 구체적인 출현 시점, 도덕성 및 의도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가 진실-거짓 구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진실-거짓 구별 평가와 아동 진술 정확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되고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개관해 본 결과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은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신뢰롭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 수사 면담을 실시하는 전문가들은 진실-거짓 구별 평가에 해당되는 사전 질문들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질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의존하여 아동의 증언 역량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요어 : 진실, 거짓, 도덕성, 의도성, 아동 증언

[†] 교신저자: 이승진,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E-mail: sjmagiclife@gmail.com

최근 들어 치명적인 범죄 사건들과 관련한 피해 아동의 진술 정확성에 대해 연구자들 및 현장 실무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아동은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정확한 회상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수사 면담 진행을 위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미법에서는 아동이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당시 사건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수사 경찰관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아동이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는 의무를 이해하는가를 바탕으로 아동의 증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Peter, 2002).

일반적으로 법조계 전문가들이나 아동 진술 조사를 담당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은 아동의 증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한 절차를 따른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수사 면담에 앞서 아동의 성명, 연령, 재학 중인 학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즐겨하는 놀이에 관한 질문들과 더불어 사실적 진술과 거짓 진술의 차이, 거짓 진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한 일련의 질문들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들을 통해 아동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들을 알맞은 단어,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여 회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는 아동의 증언 능력을 아동의 연령과 같은 확립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동의 지적 능력, 즉 정보에 대한 이해 및 판단 능력 등의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함이다(권창국, 2009).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일부

법정에서는 아동의 증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아동이 진실-거짓 구별에 관한 질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하는가를 살펴본다(Hoyano & Keenan, 2007). 진술 조사 맥락에서 진실-거짓 구별 평가는 아동 내면의 도덕성 혹은 정직성 수준을 파악하기 보다는 아동이 목격자 혹은 피해자로서 수사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만약 아동이 사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그 아동의 진술 내용은 법정에서 실증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진실과 거짓 진술에 대한 아동의 구별 능력이 아동의 기초적인 증언 능력을 신뢰롭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진실’과 ‘거짓’의 의미를 이해하는가, 진실과 거짓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가, 거짓 진술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들을 이해하는가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Ahern, Lyon과 Quas(2011) 연구에서는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실과 거짓 구별 과제를 시행한 결과 진실과 거짓 구별 과제에 능숙하지 못한 아동들이 능숙한 아동에 비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오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yon(2013)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과 진술의 정직성은 역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일수록 거짓 진술을 구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이해하는 아동보다 진술의 내용은 적더라도 진술 내용의 정확성은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진실과 거짓 진술의 구별 능력이 아동의 증언 능력을 신뢰롭게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캐나다와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진 현장 자료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증언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도 변호사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진실-거짓 구별 평가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공공연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ala, Evans, & Bala, 2010; Richards, Morris, & Richards, 2008).

전반적으로 아동 진술 조사 맥락에서 진실-거짓 구별 평가가 갖는 잠재적 문제들이 다분히 존재하고, 따라서 아동의 증언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들이 갖는 의미와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갖는 한계와 전망(조은경, 2010),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도구들의 타당도 연구(이수정, 2010) 등의 학술 연구를 통해 아동의 진술 능력을 신뢰롭게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에 이해와 진술의 정확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 사고의 발달, 즉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이해, 거짓 진술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 거짓말의 의도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진술 조사 맥락에서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평가가 아동 증언의 신뢰성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 진실-거

짓 구별 과제에 실패하는 어린 아동들이 정확한 진술을 제공할 가능성, 혹은 진실-거짓 구별 과제에 능숙한 아동들이 오정보를 인출할 가능성을 인지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증언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가 갖는 의미와 그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진실-거짓 구별 능력의 출현 시기, 도덕성이나 의도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이 진실-거짓 구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고찰은 진술 조사 맥락에서 아동 진술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 사고의 발달

진실-거짓 구별 능력의 출현

Piaget(1965)를 시작으로 아동 사고의 발달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다. 특히 진실-거짓 구별 능력의 출현 시기, 출현의 근원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실-거짓 구별 능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Perner(1997)의 연구에서는 2세 아동도 ‘거짓’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2세가 되기 이전의 아동도 ‘거짓’ 정보들을 거부함으로써 비사실적(nonfactual) 서술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Hummer, Wimmer, & Antes, 1993; Koenig & Echols, 2003).

한편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3세 이하의 아동은 ‘진실’이 내포하는 ‘사실성(factuality)’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Strichartz와 Burton(1990)의 연구에서는 3세의 참여 아동 중 37%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주어진 실험 과제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 최종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Mascaro와 Sperber(2009) 연구에서는 아동이 4세에 이르러서야 ‘거짓말쟁이’로 묘사된 실험자에 대한 아동의 신뢰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3세 이하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Lyon(2011)은 3세 이하의 아동들이 그보다 나이는 아동들에 비해 진실-거짓 구별 과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들이 3세 아동의 인지 수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3세 이하 아동의 ‘거짓말쟁이’에 대한 신뢰도가 4세 아동의 신뢰도와 달리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거짓말쟁이’에 대한 신뢰를 조절하는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ing: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고 적용하는 기능)’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Lyon, 2011).

Talwar와 Lee(2008)의 연구에서는 3-8세 연령의 아동들이 ‘거짓’ 서술이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예: 비도덕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짓’ 서술이 틀린 서술임은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enig, Clement와 Harris (2004)의 연구에서도 두 명의 실험 보조자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옳은 진술을 제공하고 다른 한 명은 거짓 진술을 제공한 경우, 3세 아동들이 옳은 진술을 제공한 실험자와 그렇지 않은 실험자

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 연구에서도 거짓말에 대한 특성과 거짓말과 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만 3세 아동들도 ‘거짓’을 이해하고, 사실적 정보를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 송현주, 2010).

이와 같은 결과들은 어린 연령의 아동들도 아동의 인지 발달적 수준이 고려된 과제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또한 진실-거짓의 사전적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진실’을 수용하고자 하고 ‘거짓’을 거부하고자 하는 아동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은 4세 이전에 ‘진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고 따라서 사실적 진술과 거짓 서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거짓 구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서적 요인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은 각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고 아동의 연령만으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분히 한계가 있다. 또한 진실-거짓 구별 능력이 진실과 거짓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거짓된 진술이 초래하는 결과 등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진실과 사실이 아님, 즉 ‘비사실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거짓에 대한 이해가 꽤 어린 연령에서 출현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들이 진실-거짓 구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거짓 구별이 아동

의 인지 발달 수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정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Piaget도 아동이 특정 정보가 ‘거짓’임을 판단할 때 그 정보의 ‘사실성’ 여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Piaget, 1965).

Lyon, Carrick과 Quas(2010)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 아동들은 특정 서술이 거짓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보다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에게는 ‘거짓’에 대한 판단이 진실에 대한 판단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이는 아동이 ‘진실’을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거짓’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성’ 여부 이외의 부가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린 아동들은 ‘거짓’의 의미를 ‘나쁘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예를 들어 아동은 사실적 서술에 대한 이해보다 ‘거짓’ 서술에 대한 이해를 부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yon & Saywitz, 1999). 또한 ‘만약 그랬다면(if-then)’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받을 경우 아동은 사실적 상황에 대한 가정보다 ‘거짓’ 상황에 대한 가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대한 가정보다 ‘타인’이 거짓말을 하는 가정을 더 잘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yon, 2011). 예를 들어 가상의 경우라 할지라도 아동은 ‘타인’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주어지는 경우에 비해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의 세부 내용이나 정황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을 더 빈번하게 제공하고, 응답 자체를 회피하는 오류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yon, 2011). 이는 타인이 아

닌 ‘자신’이 ‘거짓말’ 혹은 ‘거짓 진술’의 서술자가 되는 상황일 경우 가상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yon, Saywitz, Kaplan, & Dorado, 2001).

유사한 맥락에서 Bussey(1999)의 연구에 따르면 4-5세 아동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직한 서술과 잘못된 행동 그 자체를 동등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에 대한 정직한 진술을 잘못된 행동 그 자체보다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Peterson과 Seeto(1983)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무려 약 11세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어린 아동의 경우 ‘거짓’에 대해 암묵적인 거부감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어 잘못된 행동 혹은 이와 비슷한 특성을 포함한 부정적 행동들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Wandrey, Quas와 Lyon(2012)의 연구에서는 3-5세 아동의 경우 주어진 명제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진술의 진실 혹은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상대방이 좋은 행동을 했다는 서술이 주어졌을 때는 그 서술을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는 서술이 주어졌을 때는 그 서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 아동은 진실-거짓을 잘 구별하고, 행위자가 나쁜 행동들을 했을 때는 진실-거짓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행위자가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 사실적 진술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거짓’의 의미를 나쁘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아동의 경향성은 진실-거짓 구별과 관련된 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진실-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을 ‘거짓’ 서술에 대한 거부 반응 혹은 ‘사실적’ 서술에 대한 선호 반응에 기반을 두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진실-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은 ‘거짓’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짓’은 사리에 맞지 않거나 정의롭지 못한 형태를 일컫는다(Nucci & Turiel, 197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진실-거짓을 구별하는 아동의 능력은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 나아가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Lyon, Carrick, & Quas, 2012).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개념과 도덕성에 대한 상위 인지적 사고는 동일한 시기에 출현되기 보다는 오히려 그릇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판단이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개념보다 늦게 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Peterson et al., 1983). Lyon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도덕적 판단이 출현된 이후부터 거짓을 판단할 때 사전적 의미(예: 사실성의 결여, 사실이 아닌 것)보다 ‘거짓’이 함축하는 부정적 의미(예: 비도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거짓’ 서술을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됨’, ‘정당하지 못함’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의 연구 결과로 4.5세 아동들이 ‘거짓’을 판단할 때 ‘거짓’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mmer, Gruber, & Perner, 1985). 이처럼 ‘거짓’이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에 의존하는 경향

은 ‘의도성’의 차이, 즉 의도된 거짓과 의도되지 않은 거짓(예: 실수)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세 아동은 의도성이 포함된 ‘거짓’과 의도성이 포함되지 않은 ‘실수’를 비교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과 거짓의 구별 능력을 갖춘 아동조차도 의도된 ‘거짓’과 의도되지 않은 ‘실수’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다(Mascaro & Sperber, 2009). 또한 Seigal와 Peterson(1996)의 연구에서도 의도성이 포함된 틀린 진술과 의도성이 없는 실수에 의한 틀린 진술을 모두 동일하게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틀린 진술이기 때문에 모두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사실은 의도성이 포함된 틀린 진술과 실수에 의한 틀린 진술을 모두 동일한 거짓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권은영과 이현진(2012)이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만 5, 6, 7세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의 유형(예: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 이에 따른 도덕적 판단과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정서 반응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 즉 부정적인 의도성이 포함된 거짓말을 다른 유형의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5, 6세는 거짓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외 연구와 동일하게 어린 아동의 경우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거짓말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7세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보다 더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반응에서도 어린 아동 아동들은 성인들과 달리 모든 유형의 거짓말에서 부정적, 긍정적 정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인은 선의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서 미안하다는 부정적 정서 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에서 기쁘다는 긍정적 정서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처럼 연령 및 거짓말에 내재된 의도의 종류에 따라 거짓말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더 나아가 정서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평가를 잘 수행하는 아동도 ‘거짓’ 진술이 내포하는 사회-정서적 특성들에 의해 ‘거짓’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Lyon et al., 201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 아동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사전적 정의나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문장이 ‘사실적’ 서술인지 ‘거짓’ 서술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Lyon & Saywitz, 1999). 따라서 아동은 ‘거짓’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 반응, ‘거짓’이 내포하는 다양한 함축적 의미들로 인해 진실-거짓 구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아동이 법정 증언자로서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Wandrey et al., 2012).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의 사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이 실수는 부정적 의도성이 포함되지 않은 ‘틀린’ 진술이며 부정적인 의도성을 지닌 ‘거짓’ 진술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지, 즉 상위 인지적 사고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실수에 의한 거짓 진술과 부정적 의도가 포함된

거짓 진술을 언제쯤 구별하기 시작하는지, 이와 같은 상위 인지적인 사고에 어떤 개인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수에 의한 거짓 진술과 부정적 의도가 포함된 거짓 진술을 구별하는 능력과 진실-거짓 구별 과제의 수행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진술조사 맥락에서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

법정에서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아동이 변호사 혹은 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동의 진술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증거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아동이 기본적인 증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 혹은 아동의 진술 내용에 논리적인 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아동의 진술 내용에 의해 그릇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Lyon, 2000). 피해 아동에 대한 배심원들의 정서적 공감과 동정, 사건 혐의자에 대한 반감이나 공포 등의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은 아동의 진술 내용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들을 잘 보이지 않게 한다. 관련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진술 내용이 수사 사건과 무관하거나 그릇된 정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법정에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그 진술 내용을 무시할 것에 대해 주의를 준다 할지라도 배심원들의 의사 결정에는 아동의 진술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yon, 2011). 이처럼 배심원들이 아동의 진술 내용을 잘못된 것으로 인지한다하더라도 판결

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법정에서는 아동이 증언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미국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실제로 어린 아동이 재판 과정에 연루된 경우 진실-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가 아동의 증언 능력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진실-거짓 구별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들을 진술 조사 과정에서 아동에게 제시하는 것을 재허용 하였다(Hoyano & Keenan, 2007).

아동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함에 있어 가장 관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스코틀랜드와 캐나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금하고 아동의 진술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를 증거 자료로 인정한다(Hoyano & Keenan, 2007). 스코틀랜드에서는 2004년에 진실-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와 관련하여 그 어떤 사전 혹은 사후 평가도 실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고, 캐나다에서도 2005년에 유사한 조약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14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진술할 것이다’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형식적인 선서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Bala, Lee, Lindsay, & Talwar, 2010). 이와 같은 법적 규정들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아동의 진술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Bala, Evans, & Bala, 2010).

미국의 연방증거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목격자로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한다. 연방증거법은

제601조에 모든 증인은 원칙적으로 증언 적격이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03조에는 증인에게 증언 전 진술의 사실성에 대해 선서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증언 적격을 갖추지 못한 증인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서에 대한 특별한 형식을 제한하기 보다는 증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증인에게 진실을 증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형식적 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진실만을 진술하겠다는 증인의 선서나 확증 없이 제공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인의 선서나 확인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대 측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이러한 점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연방증거법, 2010).

한편, 연방증거법 제603조에 따르면 예비 심리(preliminary examination)에서는 ‘진실만을 진술할 것’에 대한 아동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진실만을 진술할 것’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일부 허락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다수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따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건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로서 법정의 증언석에서 ‘진실만을 진술할 것’에 대한 이해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법정에서는 어린 아동의 경우 적어도 이 아동이 신뢰로운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인지적, 언어적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National Center for the Prosecution of Child Abuse, 2009). 형식적 선서 절차의 법률적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형식적인 선서 과정이 아동의 진술 정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아동의 경우 ‘진실’의 사전적 개념을 원활하게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할 것’에 해당되는 법률적 요구, 즉 형식적인 선서 과정을 법정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만을 진술할 것에 동의합니다’와 같은 ‘서약’ 혹은 그와 유사한 절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아동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Lyon, Malloy, Quas, & Talwar, 2008). 실례로 4-7세의 아동들 중에서 진실-거짓 구별 과제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는 진실만을 진술할 것에 동의합니다’와 같은 서약을 행한 경우 진술 내용의 정확성이 그와 같은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Lyon et al., 200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yon 등(2008)은 진실-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가 비록 아동의 증언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진실만을 진술할 것에 동의합니다’와 같은 ‘서약’ 혹은 그와 유사한 절차들은 아동 진술의 정확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서약과 같은 절차만으로도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거짓 구별 과제가 아동의 증언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진실-거짓 구별 과제가 아동의 인지 발달 이외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언어 발달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거짓’ 서술을 단순히 거부하는 반응과 ‘사실이 아닌 서술’을 ‘거짓’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반응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사실이 아닌 서술’을 ‘거짓’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자신의 사고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구사하는 표현적인 언어 능력도 요구하기 때문이다(Dienes & Perner, 1999). 그러나 ‘사실이 아닌 서술’을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동이 진실-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과제 수행 능력은 정보의 출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타인에게 아동이 강한 ‘신뢰’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술적 정보를 ‘진실’로 판단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Koenig & Harris, 2008). 이는 정보 제공의 출처에 아동의 특정 신뢰나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출처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진실-거짓의 구별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결국 진술조사 맥락에서 진실-거짓 구별과 관련된 질문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과 무관하게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아동의 증언 능력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진실-거짓 구별 평가의 가치와 시행에는 찬반론이 모두 존재한다. 대략적으로는 진실-거짓 구별과 같은 아동 진술 능력을 판단하는 사전평가를 이용하지 않는 법정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Lyon, 2011). 이는 대다수의 법정이 진실-거짓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이 탐탁치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진술을 법정에서 실증적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결과들처럼 ‘거짓’에 대한 아동의 과도한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아동이 진실-거짓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진실-거짓 구별 과제에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거짓’이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 아동이 오히려 진실-거짓 구별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 역량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평가는 진술 조사 과정에서 제공된 아동의 응답을 다양한 시각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이외에 다른 마법 같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실-거짓 구별과 같은 아동 진술 역량에 대한 사전 평가가 공공연하게 허용되는 사법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진실-거짓 구별 평가에 실패한 아동의 진술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이전에 아동의 연령, 인지 및 언어 발달적 수준, 정보의 출처에 대한 아동의 믿음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의 진술 역량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 논의 및 제언

진술 조사 맥락에서 아동 수사 면담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범죄 사건에 연루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 면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아동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회상 보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아동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해 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진실-거짓 구별 평가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적 가치를 갖는 것도, 피해 아동의 정직성 혹은 도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정에서 진실-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는 질문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바탕으로 아동의 진술 능력을 판단하고 있다(Hoyano & Keenan, 2007).

본 논문에서는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 사고 발달과 관련하여 발표된 국내외의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진실-거짓 구별 능력이 아동의 증언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영국은 미국보다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을 실증적 증거로 제시하는 데 요구되는 아동의 기초 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의 증언 역량에 대한 기초 요구 사항들을 모두 철회하였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14세 이하 연령의 아동에게 법정의 형식적 선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아동의 무선서 진술을 실증적 증거로 인정하되 사건을 목격한 아동이나 피해 아동이 변호인단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Hoyano & Keenan, 2007).

아동 진술 역량의 사전 평가와 관련한 국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 두 가지로 진실-거짓 구별의 사전 평가에 대한 정당화를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아동이 사건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로서 신뢰로운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및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문(傳聞)증거배제법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보호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Lyon(2011)은 이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법정 증언석에서 아동에게 사실적 진술과 거짓 진술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은 아동 진술 능력의 사전 평가를 금하는 법적 조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법정에서는 아동이 비록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평가적 질문에 실패하더라도 아동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한다면 아동이 기본적인 진술 역량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권창국, 2009). 아동의 인지적 사고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함에 반해(Shaffer & Kipp, 2007) 수사 면담이 시작되는 시점과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의 시간적 공백은 현실적으로 꽤 크다. 결국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은 수사 면담 당시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면담 당시 진실-거짓 구별 평가에 아동이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아동의 증언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전문(傳聞)증거배제법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비해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이 사전에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Lyon, 2011). 국제적으로 어떤 사법권도 전문(傳聞)을 실증적 증거로 허용하기 위해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Hoyano & Keenan, 2007).

이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 진술 조사를 담당하는 아동 수사면담 전문가들의 다수는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실과 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을 사전

에 평가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절차라고 간주한다(Hoyano & Keenan, 2007). 실제 현장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미국(Sternberg, Lamb, Orbach, Esplin, & Mitchell, 2001), 영국(Westcott & Kynan, 2006), 뉴질랜드(Davies & Seymour, 1998)에서는 진술 조사 과정에서 진실-거짓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들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을 놓고 아동 진술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함에 반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 예측에 필요한 학술적 평가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각자의 입장을 정당화 하고 있다(Lyon, 2011).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Development)에서는 정확한 아동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수사면담 지침을 개발하였다(Lamb et al., 2008). NICHD 아동 수사 면담 지침에는 본격적인 수사 면담이 시작되기 이전에 면담 상황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라포 형성, 아동 진술의 구체성 향상을 위한 서술 정교화 훈련 등의 방법들이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NICHD 아동 수사 면담에서는 이와 같은 라포 형성이나 서술 정교화 훈련 과정에서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을 면담자들이 융통성 있게 수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Lyon, Lamb, & Myers, 2009).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에서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들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였다(Lyon et al., 2009). 그러나 아동의 진실-거짓 구별 능력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 예측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없

음을 보여주는 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진실-거짓 구별 평가의 가치는 회의적이다(Lyon, 2011). 따라서 아동 수사 면담을 실시하는 면담자들은 진실-거짓 구별 평가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질문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획득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진실-거짓을 구별하는 아동의 능력은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 수준에 많은 부분 의존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진술 조사 맥락에서 아동 진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진실-거짓 구별 과제와 같은 사전 평가들이 타당하거나 유용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진실-거짓 구별과 같은 평가들은 법정에서 형식적 서약과 같은 단순한 절차가 갖는 긍정적 효과(Lyon et al., 2008)를 기대해 보기도 이전에 피해 아동의 진술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의 증언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평가 도구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십년 전 연구자들은 아동의 증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피암시성(suggestibility)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 도구에 의한 평가는 아동의 진술 역량을 예측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Finnila, Mahlberga, Santtilaa, & Niemib, 2003). 그러나 이 도구에 의한 평가는 아동이 수사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회상을 보고할 수 있는 가, 즉 아동의 진술 역량을 판단하기 보다는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들에 아동이 얼마나 잘 저항할 수 있는 가, 즉 얼마나 '아니요'라는 올바른 응답을 제공하는 가에 대한 정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는 비판을 받았다(Melinder, Scullin, Gravvold, & Iverson, 2007). 아동이 기본적인 증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문법적 혹은 구조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암시적 정보에 취약한 경우라면 이 도구에 의한 평가는 아동의 진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아동이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질문들을 접해 본 경험이 드물고, 질문들이 수사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도구에 따른 아동의 수행을 근거로 법정에서의 아동 진술 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특정 인지적 영역에 대한 아동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의 대표적인 한계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해 아동의 연령 범위는 매우 크고 연령에 따라 아동의 인지 발달적 수준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 연령의 범위에만 실시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실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할 때 현실적으로 아동의 진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사전 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어떤 평가 도구를 개발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보다 아동의 인지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유형의 질문을 제공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일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피고측 변호사는 아동의 인지 발달적 수준을 벗어난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전략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법정에서 아동에게 제시되는 질문들이 의미론적으로, 구문론적으로 불필요하게 복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Zajac, Gross, & Hayne, 2003). 설상가상으로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들은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말이 되지 않는 질문들에도 명확한 추가 설명을 질문자에게 요구하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Pratt, 1990; Saywitz, Snyder, & Nathanson, 1999; Waterman, Blades, & Spencer, 2000). 또한 아동들은 개방형(open-ended) 혹은 반개방형(semi-open ended)의 자유 회상 질문(“무엇을 가지고 있니?”)보다 선택형 형식의 재인 질문(“A 혹은 B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에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즉 어린 아동들은 재인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오류를 보이고 회상 질문에서는 연령에 무관하게 응답의 정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한 재인 형태의 질문을 제공 받을 때 아동의 인지적인 정보 처리는 더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질문의 유형에 따라 아동 응답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Ahern, Lyon, & Quas, 2011).

한편 아동의 진술이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응답인지(desire-based response), 믿음에 기반한 응답인지(belief-based response)와 같은 사회인지적 요인에 따라서도 응답의 정확성이 다를 수 있다. Stern과 Stern(1909)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주의가 아동의 믿음(belief)보다는 바람(desire)에 집중되어 있을 때 충동에 의한 거짓 진술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욕구 기반 응답은 아동의 ‘바람’에 부합하여 유발되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동이 욕구에 기반한 응답을 하는 가, 믿음에 기반한 응답을 하는 가는 질문의 유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이 주어진 질문에 독립적인 응답을 생성해낼 필요가 없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다면 욕구 기반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동이 질문 자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욕구 기반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맞닿을 필요가 없을 때 아동은 욕구에 기반한 응답을 제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또한 아동들은 회상(recall) 질문 보다 재인(recognition)과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더 거짓 진술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질문의 유형에 따라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초래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아동의 진술 역량 특히 진실-거짓 구별에 대한 이해 수준과 관련된 국내외의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의 고찰에 따른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 보자면 아동은 진실-거짓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들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실-거짓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여 진실-거짓 구별 과제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아동들이라도 거짓 보고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술 조사 맥락에서 아동의 진술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거짓 구별 평가를 법정에서 의무화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진실-거짓 구별 평가 이외에도 아동의 기본적인 증언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어떤 절차나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그 질문의 종류, 질문의 특성, 질문자와 아동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총괄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은영, 이현진 (2012). 한국 아동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17-133.
- 권창국 (2009).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정책*, 21(2), 63-94.
- 김윤, 송현주 (2010). 만 3, 4세 아동들의 거짓말 이해와 사실 추론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71-87.
- 이수정 (2010).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도구들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2), 105-116
- 조은경 (2010).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피해자학연구*, 18(2), 47-60.
- Ahern, E. C., Lyon, T. D., & Quas, J. A. (2011). Young children's emerging ability to make false state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7, 61-66.
- Bala, N., Evans, A., & Bala, E. (2010). Hearing the voices of children in Canada's criminal justice system: recognizing capacity and facilitating testimony. *Child and Family Law Quarterly*, 22, 21-45.
- Bala, N., Lee, K., Lindsay, R. C. L., & Talwar, V. (2010). Hearing the voices of children in Canada's criminal justice system: Recognizing capacity and facilitating testimony. *Canadian Bar Review*, 22(1), 21-45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 Davies, E., & Seymour, F. W. (1998). Questioning Child Complainants of Sexual Abuse: Analysis of Criminal Court Transcripts in New Zealand.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5, 47-61.
- Dienes, Z., & Perner, J. (1999) A theory of implicit and explicit knowledg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22, 735-755.
- Finnila, K., Mahlberga, N., Santtilaa, P., & Niemib, P. (2003). Validity of a test of children's suggestibility for predicting responses to two interview situations differing in degree of suggestiv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5, 32-49.
- Hoyano, L., & Keenan, C. (2007). *Child Abuse: Law and Policy Across Boundarie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Hummer, P., Wimmer, H., & Antes, G. (1993). On the origins of denial nega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20, 607-618.
- Koenig, M. A., & Echols, C. H., (2003). Infants' understanding of false labeling events: the referential roles of words and the speakers who use them. *Cognition*, 87, 179-203.
- Koenig, M. A., & Harris, P. L. (2008). The basis of epistemic trust: Reliable testimony or reliable sources? *Episteme*, 4, 264-284.
- Koenig, M. A., Clement, F., & Harris, P. L. (2004). Trust in testimony: Children's use of true and false statements. *Psychological Science*, 15, 694-698.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Wiley.

- Lyon, T. D. (2000). Child witnesses and the oath: empirical evidence.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73, 1017-1074.
- Lyon, T. D. (2011). Assessing the competency of child witnesses: Best practice informed by psychology and law. In M. E. Lamb, D. La Rooy, L. C. Malloy, & C. Katz (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pp.69-85). Sussex, UK: Wiley-Blackwell.
- Lyon, T. D. (2013). Child witnesses and imagination: Lying, hypothetical reasoning, and referential ambiguity. In M. Taylor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Development of Imagination*. (pp.126-136). New York: Oxford.
- Lyon, T. D., & Saywitz, K. J. (1999). Young maltreated children's competence to take the oath.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16-27.
- Lyon, T. D., Carrick, N., & Quas, J. A. (2010). Young children's competency to take the oath: Effects of task, maltreatment, and age. *Law & Human Behavior*, 34, 141-149.
- Lyon, T. D., Carrick, N., & Quas, J. A. (2012). Right and righteous: Children's incipient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rue and false statement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4(3), 437-454.
- Lyon, T. D., Lamb, M. E., & Myers, J. (2009). [Legal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NICHD interviewing protocol.] Author's response to Vieth (2008). *Child Abuse & Neglect*, 33, 71-74.
- Lyon, T. D., Malloy, L. C., Quas, J. A., & Talwar, V. (2008). Coaching, truth induction, and young maltreated children's false allegations and false denials. *Child Development*, 79, 914-929.
- Lyon, T. D., Saywitz, K. J., Kaplan, D. L., & Dorado, J. S. (2001). Reducing maltreated children's reluctance to answer hypothetical oath-taking competency questions. *Law & Human Behavior*, 25, 81-92.
- Mascaro, O., & Sperber, D. (2009). The moral, epistemic, and mind reading components of children's vigilance towards deception. *Cognition*, 112, 367-80.
- Melinder, A., Scullin, M. H., Gravvold, T., & Iversen, M. K. (2007). The stability and generalizability of young children's suggestibility over a 44-month interval. *Psychology, Crime and Law*, 13, 459-468.
- National Center for the Prosecution of Child Abuse (2009). *Legislation and case law regarding the competency of child witnesses to testify in criminal proceedings*. Available at http://www.ndaa.org/pdf/Competency_of_Child_Witnesses_%282009%29.pdf.
- Nucci, L.,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Perner, J. (1997). Children's competency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a witness truth lies and moral t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21-35.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 New York: MacMillan.
- Pratt, C. (1990). On asking children-and adults-bizarre questions. *First Language, 10*, 167-175.
- Richards, P., Morris, S., & Richards, E. (2008). *Turning up the Volume: The Vulnerable Witnesses* (Scotland) Act 2004. Edinburgh: 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
- Saywitz, K. J., Snyder, L., & Nathanson, R. (1999). Facilitating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child witnes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58-68.
- Shaffer, D. R., & Kipp, K. (2007).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6th Ed.) Belmont, CA: Wadsworth.
- Siegal, M., & Peterson, C. C. (1996). Breaking the mold: A fresh look at children's understanding of questions about lies and mistak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322-334.
- Stern, C., & Stern, W. (1909). Erinnerung, Aussage und Lüge in der ersten Kindheit [Recollection, testimony, and lying in early childhood] Barth; Leipzig, Germany.
- Sternberg, K. J., Lamb, M. E., Orbach, Y., Esplin P. W., & Mitchell, S. (2001). Use of a structured investigative protocol enhances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free recall prompts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997-1005.
- Strichartz, A. F., & Burton, R. V. (1990). Lies and truth: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Child Development, 61*, 211-220.
- Talwar, V., & Lee, K. (2008). Social and cognitive correlates of children's lying. *Child Development, 79*, 866-881.
- Wandrey, L., Quas, J. A., & Lyon, T. D. (2012). Does valence matter? Effects of negativity on children's early understanding of truths and li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3*, 295-303.
- Waterman, A. H., Blades, M., & Spencer, C. P. (2000). Do children try to answer nonsensical ques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11-226.
- Westcott, H. L., & Kynan, S. (2006). Interviewer practice in investigative interviews for suspected child sexual abuse. *Psychology, Crime and Law, 12*, 367-382.
- Wimmer, H., Gruber, S., & Perner, J. (1985). Young children's conception of lying: Moral intuition and the denotation and connotation of "to lie."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93-995.
- Zajac, R., Gross, J., & Hayne, H. (2003). Asked and answered: Questioning children in the courtroom.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0*, 199-209.

1차원고접수 : 2013. 03. 30.

수정원고접수 : 2013. 08. 17.

최종게재결정 : 2013. 09. 12.

Consideration of Prior Evaluation on the Capacity of Children's Testimony: Focused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ruth and Lie

Seungjin Le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assessments regarding the ways in which to evaluate children's competency to testify before the investigative and/or forensic interview proceeds. Basic competencies of children to testify concerning the ability to perceive, remember and communicate events could be demonstrated by prompting the children's report of a recent event. Among the basic competencies, the focus has been on children's truth-lie competency which concerns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truth and li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elling the truth. Children's truth-lie competency has been evaluated by procedures such as asking children whether simple statements are true or not, and by asking children to promise to tell the truth. Researchers and legal professionals in America and Britain have incessantly discussed whether child victims and witnesses are required to establish truth-lie competency before being allowed to testify.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in Korea up to now with respect to the systematic and analytical ways of evaluating children's competency to testify and how these competencies may associate with the actual accuracy of children's testimony. Thus, the goals of this paper were to deliberate the difficulties children have in testifying about the truth and lies by study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mergence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truth and lie, children's moral evaluation of truth and lie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intentionality of lies, in particular. Ultimately, this organization of knowledge would be helpful in apprehending how children's competency to testify in court should be evaluated and interpreted during investigative and/or forensic interviews.

Key words : truth, lies, morality, intentionality, children's testimony